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778
----------	-------

발의연월일 : 2026. 5. 4.

발 의 자 : 윤준병 · 박희승 · 차지호
이성윤 · 이춘석 · 문금주
안호영 · 안태준 · 이정문
문대림 · 김병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을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

가.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41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 음)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 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 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 하여 <u>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 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 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u>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 ----- ----- ----- <u>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u> <u>를</u> ----- ----- -----.
<신 설>	1. <u>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목</u> <u>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u> <u>하는 금액(이하 “유류세 보조</u> <u>금”이라 한다)</u> 가. 「교육세법」 제5조제1 항,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 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 과되는 교육세, 교통·에

<u><신 설></u> ③ ~ ⑤ (생 략)	<u>너지·환경세, 자동차세</u> <u>나. 「개별소비세법」 제1조</u> <u>제2항제4호라목, 「교육세</u> <u>법」 제5조제1항에 따라</u> <u>중유에 각각 부과되는 개</u> <u>별소비세, 교육세</u> <u>2.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u> <u>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u> <u>보가 발령된 경우 내항화물운</u> <u>송사업자가 내항화물운송용</u> <u>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구매</u> <u>하는 유류의 구매 비용</u> ③ ~ ⑤ (현행과 같음)
--	--